

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3년 8월 17일, 박채아 의원 외 11명

나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2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3년 8월 30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박채아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운영위원장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정의함(안 제2조)
- 협의회 구성, 임기,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3조 ~ 제5조)
- 협의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단위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22개 시·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상호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
- 안 제2조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
- 안 제3조는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구성은 시군별 지역협의회를 통해 선출된 회장을 협의회 회원으로 하고, 그 밖에 필요한 임원의 선출과 종류, 정수 등에 대해서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함
- 안 제4조는 임원의 임기와 회원의 자격 상실을 규정함

- 안 제5조는 협의회 회의의 종류와 의결 방법을 규정함
- 안 제6조는 협의회 위원의 참여 의무, 재산상의 권리·이익 취득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
- 안 제7조는 협의회 위원의 무보수, 교통비 실비지급, 사업필요 경비 등 예산지원에 관하여 규정함
- 안 제8조는 조례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함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 및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의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제정이 가능함
- 본 조례안은 단위학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법률 검토를 거친 바 있음.
- 본 조례안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1조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정보교환 등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

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7개 시·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※ 조례제정 : 7곳(강원, 경남, 세종, 전북, 제주, 충북, 충남)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6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7. 수정안의 요지 : 「없음」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9. 소수의견의 요지 : 「없음」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